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54호

2017. 6. 26.

건 명	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도로교통과)		
제안 및 제출자	이금자 의원 외 3명	제안연월일	2017. 6. 12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6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O 어린이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O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을 명시함(안 제3조)
-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□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